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12호
2. 발 의 자 : 이호대 의원
3. 발의일자 : 2021. 8. 11.
4. 회부일자 : 2021. 8. 18.

## II . 제안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감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점자 및 자막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반영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III . 주요내용

1.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2.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 이호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612호로 발의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과 교육 자료 개발·보급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학업 수행 지원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지난 2020년 10월 20일 국회에서는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sup>1)</sup>
-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1년 4월 20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sup>2)</sup>

1) 제25조(순회교육 등)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2)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원격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8조의2 제3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 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점자 및 자막 자료 등의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021학년도 끝맛무지개교실 운영 현황3)**

○ 기간 : 2021. 3. 8.(월) ~ 12. 31.(금) ※ 수업일수: 200일(1학기 103일, 2학기 97일)

○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재학 중인 **건강장애·요보호 학생**

○ 학생현황 (2021. 7. 13. 기준, 단위 : 명)

학교급 기간	초	중	고	계	비고
3월	90	76	67	233	
4월	100	85	68	253	
5월	104	86	75	265	
6월	110	92	77	279	
7월	111	93	79	283	건강장애 230명, 요보호 53명

○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수업 시수(주당) : 초등1~2학년 6시간, 초등 3~6학년 12시간, 중등 12시간
- 수업 운영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 교육 과정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초등)
  - 초등학교 1, 2학년은 통합교과(6단위) 운영
  - 고등학교는 계열 구분 없이 통합교육과정 운영
- 강사 : 총 14명, 초·중등 정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파견교사 : 초등 교사 2명
  - 원격강사 : 초등 3명, 중등 9명(국어 2명, 수학 2명, 영어 2명, 사회 2명, 과학 1명)

학급 수	강사 수	월 평균 이용학생 수	개별학생 평균 이용일
14	14	235.3	50.03

3)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21.6.1.)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꿀맛무지개교실’을 통해 건강장애·요보호 학생<sup>4)</sup>들에게 원격수업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수술 등으로 결석이 불가피한 그 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원격수업 제공의 필요성이 있어왔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학업 수행 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01, 2021.8.19.).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4) - 건강장애학생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요보호학생 : 화상 및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학생

# 관계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0. 10. 2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23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2. 3.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 1. 29.>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 10. 30.>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1. 3. 1.] [교육부훈령 제365호, 2021.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8]

5.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나. 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1) 학적처리 :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처리

(가)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3) 성적처리

(가)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한다.

(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